#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69 발의연월일: 2020. 11. 10.

발 의 자 : 이형석 · 허 영 · 안규백

임호선 · 이용빈 · 송옥주

이병훈 · 양기대 · 진성준

맹성규 • 홍익표 • 이광재

한병도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를 공유하는 세목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납입관리자로 지정하는 시도지사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각 시도는 순차적으로 1년간 납입관리자 업무를 수행한 다음 상당기간 후에 다시 맡게 되는 체계여서 업무량 편차를 야기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납입관리자의 범위에 지방세 조합장을 추가하여 납입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안 제71 조제1항), 예고와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고자 하는 것임(안 부칙).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형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중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인구 또는 납입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 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행 혅 개 정 아 제71조(납입) ① -----제71조(납입) ① 특별징수의무자 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또는 납입관리의 효율성과 전문 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 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장ㆍ광 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 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자치도지사(이하 "납입관리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 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 하여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